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9. 8.
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8. 27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1. 8. 31.

다. 상정일자

- 제250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21. 9. 8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재무과장 나혜진】

가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 등을 정비·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등 개정사항('20.12.22) 조례에 반영
-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 감경대상 확대 조항 신설(안 제28조제4항 제5호 및 제28조제5항)
-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 조정범위 확대(안 제30조)
-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기간 유예조항 삭제(안 제31조제4항)
- 「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」의 범위에서 비소모품 취득단가 기준을 적정단가로 상향 조정(별표2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- 동 개정 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과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, 기타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되었음.
- 개정 조문을 살펴보면,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23조, 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의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있으며,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28조제4항의 법령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,
-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, 제35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 감경대상에 청년친화강소기업⁹⁾과 자치단체 귀책사유를 포함하여 감경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기업의 육성 등을 고려하고 자치구의 책임행정을 도모하는 매우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됨.
- 그리고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,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현재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 감면율을 확대하고 있고 (안 제30조),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 인하 여부와 상관없이 공유재산 사용료, 대부료 납부를 유예하게 되어있는 현행 조례의 규정이 상위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 범위를 벗어나 있어 이를 바로잡아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있는 바, 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¹⁰⁾에 부합하는 개정으로 보여짐.(안 제31조제4항)

9) 청년친화강소기업: 임금·일생활균형·고용안전성·청년고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중소기업

10) 지방자치법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- 그리고, 별표 2 <물품의 품종 · 상태구분> 규정 중 비소모품(비품) 취득단가 기준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바, 소모성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기준 단가(10만원)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비품으로 관리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, 상향조정되는 기준 단가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¹¹⁾의 소모품의 범위 내에 있어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, 다만, 소모품으로 분류될지라도 그 용도나 성질상 주요물품은 별도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준단가 상향에 따른 공용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5. 토론요지: 없음
- 6. 심사결과: 수정가결 ※ 수정안 첨부
-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- 8. 기타: 없음

11)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(2018.7.) 다. 소모품의 관리. 1) 소모품의 정의 -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.